##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42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민병덕·김한규·김남희

이수진 • 박희승 • 송재봉

김성환 · 김남근 · 김종민

김용만 의원(10인)

## 제안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됨.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코인리딩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적인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도 코인리딩방의 불법적 영업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코인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7,000억원을 상회함.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

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그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 나.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다.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의 행위규제로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며,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및 이용자 유의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건 전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제22조제2항 신설).

#### 법률 제 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용자의"를 "이용자 등의"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이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그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의2(제9조의2 및 제9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장의2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 제9조의2(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의 신고) ①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영 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 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3.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 ③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 2. 제2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제6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 4. 제9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5호의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에 따른 자문이나 조언을 받는 고객(이하 "자 문고객"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1.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이 조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 자의 폐업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⑧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로 본다.
- 1.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3.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제9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⑨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문고객 보호를 위하여 가상 자산 유사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① 제9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의3(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자는 자문고객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문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2. 자문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일 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3. 자문고객으로부터 금전·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치를 받는 행위
- 4. 자문고객에게 금전·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자문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 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5.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6. 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②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가상자산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자문고객에게 귀속된 다는 사항
- 2. 정식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이며 자금운 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 ③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 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한 조언이 다른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 5. 그 밖에 자문고객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를 "제6항까지에"로 한다.
  - ③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유사자문 업을 영위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중"을 "제19조제1항 각 호,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중"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 5.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	제1조(목적)
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	
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u>이용자의</u>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	<u>등의</u>
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b>.</b>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이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그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
	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u>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u>
	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
	나 조언을 하는 것을 영업으
	로 하는 것을 말한다.
<u>&lt;신 설&gt;</u>	제2장의2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 설>	

- 신고) ①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한다.
- ②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영 위하는 자(이하 "가상자산 유 사자문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폐지 한 경우
-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경우
- 3.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 ③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유사자문업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유사자 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 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건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 2. 제2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 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제6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

   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 4. 제9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 아니한 자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5호의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에 따른 자문이나 조언을받는 고객(이하 "자문고객"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5년으로 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다.
- 1.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 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
   제49조 또는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u>자</u>
- 3. 이 조 또는 제9조의3을 위반 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금융위원회는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 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 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 또는 시정

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⑧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로 본다.
- 1.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제 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제 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 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3.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제9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위반한 경우
- ⑨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문고객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 ① 제9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9조의3(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는 자문고객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문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2. 자문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

     거나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3. 자문고객으로부터 금전・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치를 받는 행위
  - 4. 자문고객에게 금전・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자문고객에 대한 제3자의

- 금전·가상자산, 그 밖의 재

   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

   는 대리하는 행위
- 5.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6. 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 단에 관한 자문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②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가상자산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

   으며 그 손실은 자문고객에

   게 귀속된다는 사항
- 2. 정식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이며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 항
- ③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를 가 상자산사업자 또는 금융회사 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 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 는 광고
-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 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가상자산 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가상 자산의 가치에 대한 조언이 다른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 5. 그 밖에 자문고객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19조(벌칙)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 ③·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並科)할 수 있다.

⑥ (생략)

- 제19조(벌칙) ①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영위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신고를 한 자
  - ⑤·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 ⑦ -----제6항까지에----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0조(몰수·추징) ① <u>제19조제1</u> 제20조(몰수·추징) ① <u>제19조제1</u> 항 각 호 및 제2항 중 어느 하 항 각 호, 제2항, 제3항 및 제4 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② (생략)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u>5.</u> ∼ <u>8.</u> (생 략)

<u><신 설></u>

<u>항 각 호 중</u>
<u>.</u>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u>한 자</u>
<u>6.</u> ~ <u>9.</u> (현행 제5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
<u>출한 자</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u>③</u> 제1항 및 제2항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	
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 징수한다.	<u>,</u>